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무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등〉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5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지 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복수차관제 도입	5
2. 법무부 사무 용어 변경(행형→교정), 법무부 사무에 ‘범죄예방’ 추가 및 차관보 신설	8
3.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 신설	11
4. 교정청 신설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03. 18.
3. 회부연월일 : 2026. 0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검찰·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재 정원이 34,574명인 대규모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검사 출신의 장관과 차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이 운영된 실정임.

그러나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정청, 이민청 등의 설립을 통해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기민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보다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무부가 타 부처의 규모에 비해 10배에서 최대 40배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임을 감안하여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여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에 걸맞게 정책 조정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며, 날로 중요성이 증대하는 출입국 및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어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안 제29조제2항 단서)하고, ②법무부 사무 용어인 ‘행형’을 ‘교정’으로 변경하고 법무부 사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하며, 차관보를 신설하고(안 제35조제1항·제3항), ③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며(안 제35조제2항), ④법무부 소속으로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교정청을 신설(안 제35조제6항·제7항)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9조(행정각부) ① (생략)	제29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u>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u> 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② ----- ----- ----- --. ---- <u>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u>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u>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제35조(법무부) ① ----- <u>검사사무·교정·범죄예방·인권옹호·출입국관리</u> -----

를 관장한다.	-----.
<신 설>	② 법무부에 <u>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u> 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 설>	③ 법무부에 <u>차관보 1명</u> 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⑥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u>교정청</u> 을 둔다.
<신 설>	⑦ 교정청에 <u>청장 1명과 차장 1명</u> 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제도 운용 등 법무부 소관 업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분야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의 조직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각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복수차관제 도입(안 제29조제2항 단서)

개정안은 법무부에 제2차관제를 도입하여 현행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무부의 전체 정원은 '26년 6월 현재 23,937명¹⁾(본부 779명, 소속기관 23,158명)으로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에 맞추어 2차관제를 통한 정책 조정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보다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임.

정부의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정경제부 등 4개 행정부처에 도입되었고, 이후 복수차관의 설치 여부는 내부 업무의 기능적 차이가 크거나 2개 이상 부처의 기능이 통합·혼재된 경우에 정부조직 개편 시 조직 규모 등을 토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측면이 있음.

2026년 6월 현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 내 조직 규모 및 분야별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소관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1) 참고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법무부 정원이 34,574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검찰청 인원(약 1만명)을 포함한 수치로 보여짐.

【 부처별 복수차관 간 분장사무 】

부처명	1차관	2차관	비고
재정경제부	세제, 경제정책	국고, 국제금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정보통신	
외교부	지역외교	외교정책, 다자외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보건, 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 환경	에너지	
국토교통부	국토,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자료 :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경우 검사사무, 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제소송 대응, 행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내 기능 분산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무부의 주요 사무들이 ‘국가 법질서 유지 및 인권보호’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융합 수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장 사무 간의 상호 연계성과 기능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의 현행 기능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유기적 업무 체계, 주요 사무들의 이질성·복잡성 여부, 차관의 통솔 범위 등을 종합할 때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한 기능상 분리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법무부 사무 용어 변경(행형→교정), 법무부 사무에 ‘범죄예방’ 추가 및 차관보 신설(안 제35조제1항·제3항)

안 제35조제1항²⁾은 법무부 사무 용어인 ‘행형’을 ‘교정’으로 변경하고, 법무부 사무에 ‘범죄예방’을 포함하며, 제3항에서는 법무부에 차관보(1명)를 신설하려는 것임.

먼저, 법무부 소관 사무 용어 중 ‘행형’을 ‘교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응보적 관점의 형 집행보다 수형자의 교정 등 재사회화가 근본적 목표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교정’이 ‘행형’의 의미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³⁾, 교정행정에서 범죄자의 수용 관리와 교화 간의 합리적 조화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타 법률⁴⁾에서도 여전히 ‘행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안 제35조제1항과 같이 법무부 사무에 ‘범죄예방’을 포함하려는 것은 다양해지는 법무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교정·범죄예방·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략)

③ 법무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3) 행형: 자유형의 집행방법 및 사형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수용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교정: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4) 소년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다만,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무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데, 같은 법⁵⁾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경찰법」⁶⁾과 「경찰관 직무집행법」⁷⁾에서는 치안 사무를 구체화하여 범죄예방을 경찰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범죄예방 기능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행법상 범죄예방 사무의 주무기관은 ‘경찰청’인데,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장관의 관장 사무에 ‘범죄예방’을 명시하는 것은 업무 중복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셋째, 안 제35조제3항은 법무부에 차관보(1명) 설치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부(部)내 장·차관을 보좌하고 업무의 정책 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차관보는 1955년 국방부에 보좌기관으로 최초 설치한 이래, 장관과

5)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행 「정부조직법」 상 9개 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재정경제부 등 5개 부가 직제에 반영하여 차관보를 설치·운영하고 있고⁸⁾, 교육부 등 4개 부는 그렇지 않음⁹⁾.

【현행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된 部】

차관보	<9개> 재정경제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	--

【‘직제’상 차관보 설치 여부】

차관보 <u>설치·운영</u>	차관보 <u>미설치</u>
<5개>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4개>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개정안과 같이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소속의 차관보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경우, 실·국 단위로 분산된 정책 과제를 통합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유연한 정책 조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설치 필요성은 현행 법무부의 지휘 통솔,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기능 수행 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차관보는 제도의 특성상(보좌기구이며, 하부조직 설치 불가 등) 부처 내 보좌기구 필요성, 업무 수행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의 직제로 정하여 운영함.

9) 최근 연혁으로 교육부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폐지되며 이를 보좌하던 차관보를 폐지('25.10.)하였고, 행안부는 지방시대 실현 관련 현안을 전담하던 차관보를 폐지하고 감축된 정원을 활용하여 자치혁신실로 개편('25.11.)한 바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3.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 신설(안 제35조제2항)

안 제35조제2항¹⁰⁾은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전담하는 정무직 본부장¹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2026년도 4월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약 8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수준이고, 이 중 국내 체류외국인¹²⁾은 약 287만 명으로, 등록외국인 162만 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58만 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67만 명으로 나뉨.¹³⁾ 이처럼 국내 외국인 규모는 지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 조직(13부 1청)의 부처별

10)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35조(법무부) ① (생략)

②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현행 법무부 하부조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본부장 직급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국내 체류외국인”은 관광 기타의 사유로 입국하여 90일 미만 단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함.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기능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와 취업 지원을,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관장하며, 행정안전부 등 여타 부처에서도 소관 영역에 따라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각기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부처별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 주요 부처 현황】

부처	정책대상	기능
법무부	모든 외국인	외국인정책 총괄, 비자발급, 국적, 체류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난민정책, 외국적동포정책, 영주·귀화 정책, 사회통합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 지원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 취업지원
행정안전부	등록외국인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유치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영어강사 등	외국인유학생 유치, 영어회화 강사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	외국인력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총괄,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저출산 대책 등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인재	기초과학·IT 우수인력 유치·교류
국토교통부	외국인관광객	외국인 환승관광 활성화, 공항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 등 농촌다문화가족 지원
해양수산부	외국인근로자	항만국경 관리,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기능 인력 지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정책

자료 :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현재 다수의 부처가 외국인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중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법무부 내 출입국·이민 관리 사무를 전담하는 정무직 본부장(차관급)을 신설하는 경우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이민 정책 수요에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¹⁴⁾이 법무부 고유 사무로 명시하려는 ‘이민관리’는 아직 그 법적 정의나 구체적인 사무 범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실질적인 기능 조정 또는 조직 재편 없이 차관급 정무직을 먼저 신설할 경우, 기능상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 등 정책을 둘러싸고 유관 부처의 사무 조정 논의를 통한 관계 부처 간 역할 정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에 이를 총괄하는 정무직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14)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35조(법무부) ① (생략)

②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4. 교정청 신설(안 제35조제6항·제7항)

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교정청(청장 1명, 차장 1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¹⁵⁾, 현행 법무부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는 1948년 법무부 행정국으로 출발하여 2007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1본부장¹⁶⁾ 2정책단 8과, 소속기관 58개)로 승격되어 교정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16,817명, 2026년 예산은 1조 9,801억원으로 법무부 전체 정원의 70.46%, 예산의 41.73%를 차지하고 있음.

현행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 곤란하다는 한계와 함께, 1만 6,000여명의 교정 공무원들이 6만 4,000명('26. 3. 기준)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수형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형자

15)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35조(법무부) ⑥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둔다.

⑦ 교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현행 법무부 하부조직인 '교정본부'의 본부장 직급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제12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들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등 교정행정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¹⁷⁾.

교정업무는 범죄자의 수용 관리와 처우에 관한 오랜 실무 경험과 학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전문적 분야라는 점에서 교정본부를 독립된 외청으로 승격하는 경우, 교정행정의 향상과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과 아울러 법무부의 보호관찰 및 형사관련 법제도 절차 업무 간 유기적 연계가 저하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검사사무,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부의 핵심 기능들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독립 외청으로의 승격을 통한 기능 분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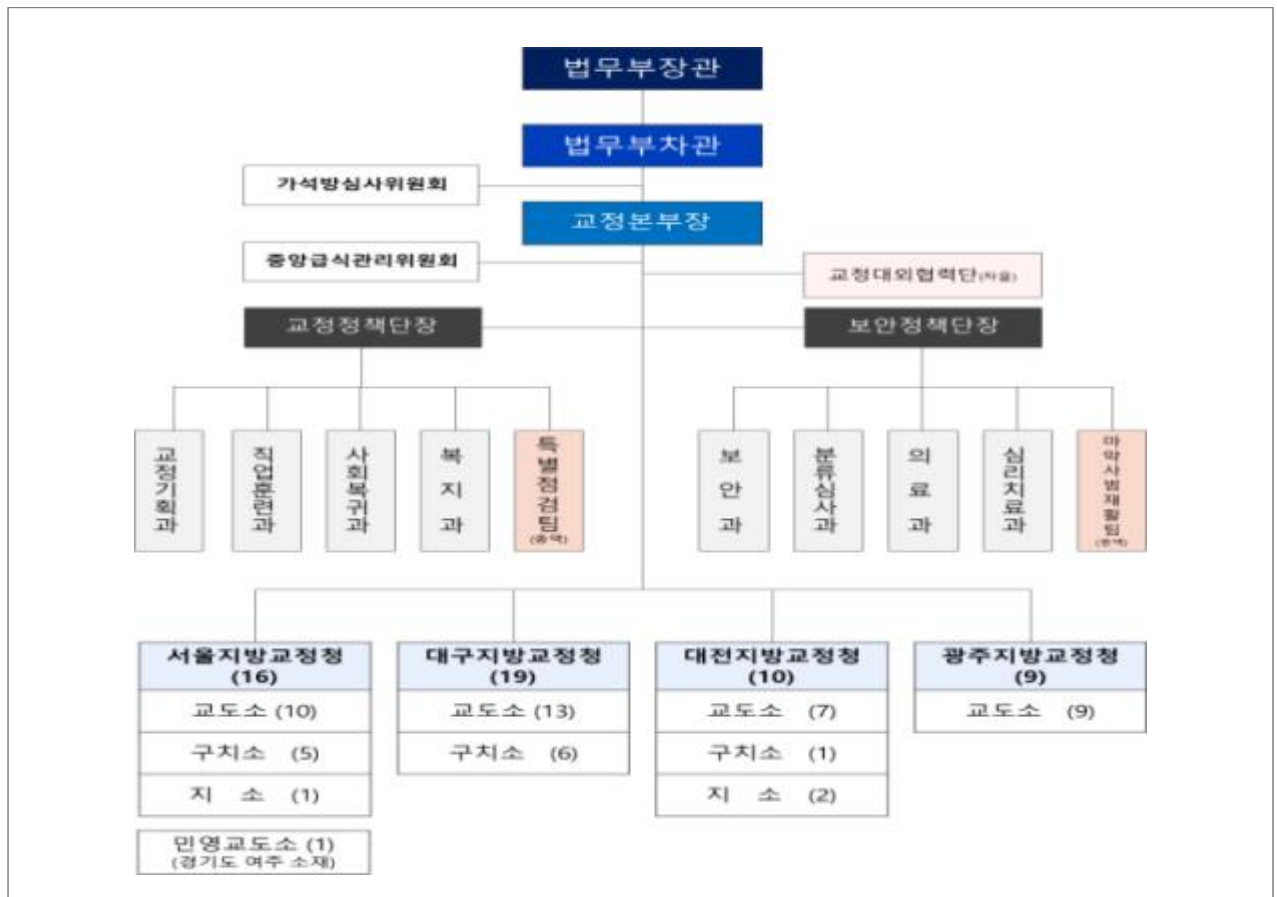
17) 제19대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882호)이, 제20대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373호 /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469호)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참고1

교정본부 조직현황 ('26. 6. 1.기준)

□ 기구

- 교정본부 : 1본부장, 2정책단, 8과, 3팀(총액2, 자율1)
- 소속기관 : 58개 기관(지방교정청 4, 구치소 12, 교도소 39, 지소 3)
- 조 직 도



□ 정원 : 16,817 (법무부 전체정원의 70.46%)

구분	합계	일 반 직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 사	전문 경력 가군	전문 경력 나군
계	16,817	19	11	125	71	417	1,670	2,071	5,843	6,465	4	10	109
본 부	102	3	2	6	5	24	36	17	5	4			
소 속*	16,715	16	9	119	66	393	1,634	2,054	5,838	6,461	4	10	111

* 법무연수원 포함

□ 예산 : 1조 9,801억(법무부 전체예산의 4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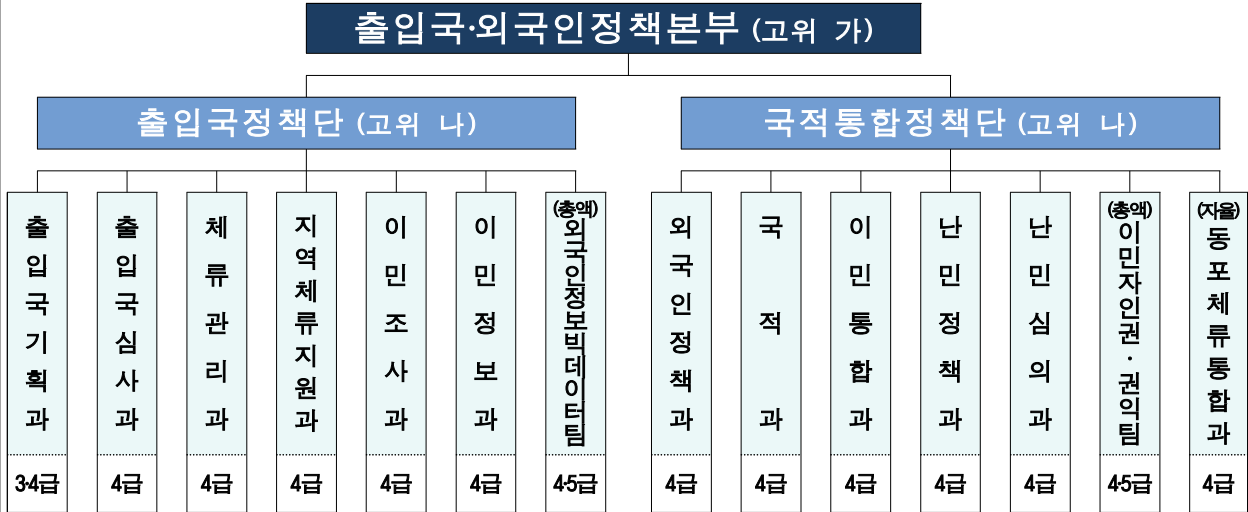
참고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현황 (’26. 6. 1.기준)

□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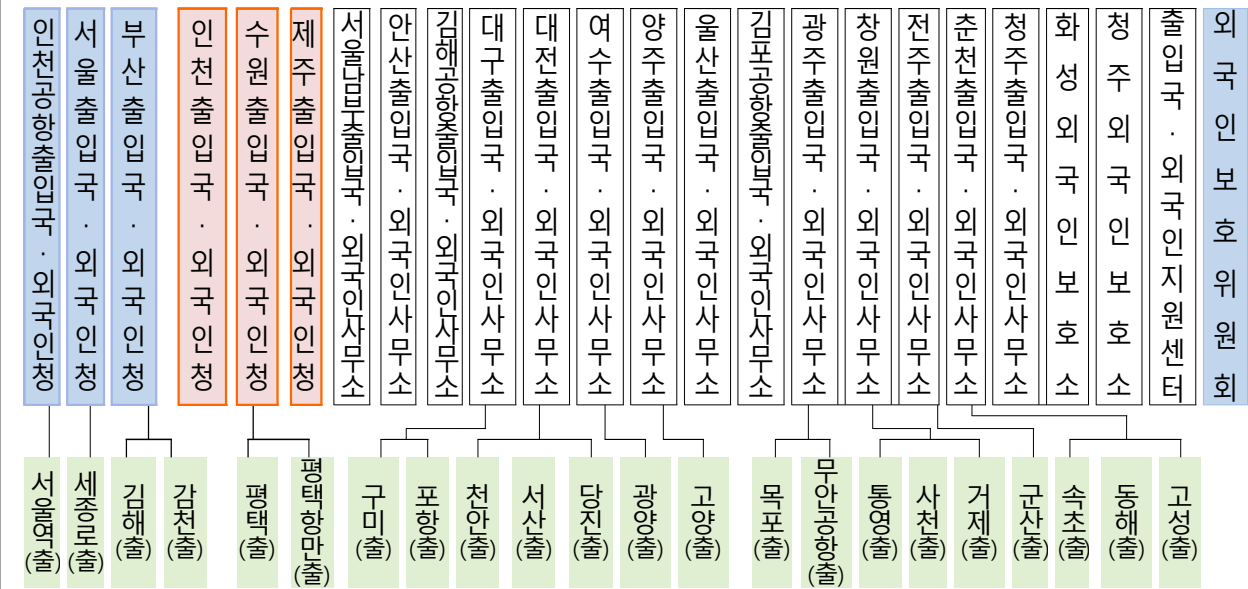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1본부장, 2정책단, 11과, 2팀^{총액}, 1자율기구
- 소속기관 : 46개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사무소 14, 출장소 22,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외국인보호위원회 1)
- 조 직 도

▶ 본부



▶ 소속기관

■ 고위공무원 기관장(상임위원 등), ■ 3급 기관장, □ 4급 기관장 ■ 5급 출장소장



□ 정원

구분	합계	일 반 직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797	7	5	30	16	153	504	764	728	590
본 부	119	3	1	10	4	32	36	24	4	5
소 속	2,678	4	4	20	12	121	468	740	724	585

□ 개 요

- **(개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차관을 직접 보좌
- **(법적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제5항 및 제30조제2항 등 9개 부처조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1조
- **(기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장·차관을 직접 보좌
- **(특이사항)** 다른 보좌기관과 달리 차관보는 ①**정부위원**이며(정조법 제10조), ②**하부조직 설치 불가**(통칙 제11조 제2항)

□ 운영 현황

- 정부조직법상 **9개**部に**설치근거**가 있으나,
- 5개 部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4개 部는 **미 설치**

구분	설치	미설치
정부조직법상 설치 가능부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08.2월 조직개편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 그간 보좌기관인 차관보가 보조기관(계선)과 같이 운영된 점을 감안, 원칙적 폐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박근혜정부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문체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문재인정부	기재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윤석열정부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국토부
이재명정부	재경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 차관보는 제도의 특성상* 부처 내 보좌기구 필요성, 업무수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좌기구이며, 하부조직 설치 불가 등

자료: 행정안전부